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 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  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 
 전화 : 2094-0470~5



제1631호 2010. 4. 9

**조 례**

제889호	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.....	2
제890호	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.....	22
제891호	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.....	27

**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**

- ▶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2094-0474 / FAX: 2094-0479
- ▶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▶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D-3일 접수 → 
 D-2일 편집·교정 → 
 D-1일 편집·교정 → 
 D일 발간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## 조 례

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0년 4월 09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#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## 1. 개정이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는 한편,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“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 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하는 등 도로명주소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“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”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함.
- 나.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는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수수료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함(안 제8조)
- 다.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19조)
- 라. “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함(안 제24조)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명 중** “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장(제1조, 제2조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도로명주소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, 「도로명 주소대장규칙」 및 「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」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삭제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”를 “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)**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(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, 제작·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),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(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)를 기준으로 한다.

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8조의2(원인자부담)**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규칙」에 따른 세입·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.

제4장과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각각 “법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도로명”을 “도로명주소”로 하고, 제1항 및 제2항의 “도로명사업담당부서”를 “도로명주소담당부서”로 한다.

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6장과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

##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

**제15조(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)**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, 훼손·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·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·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**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상의 지방공사·공단
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, 수량, 위치
2. 계약기간 및 금액
3.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
4.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
5.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
6.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
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**제17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)**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·망실되었거나 훼손·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수탁자의 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7장의 제목 중 “도로명시설”을 “도로명주소안내판 등”으로 하고,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광고의 범위)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을 광고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20조 중 “안내표지판”을 “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”으로 한다

제23조제1호 중 “새주소안내도 부착,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 시설 설치”를 “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,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”로 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새주소위원회 등”을 “도로명주소위원회 등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”를 “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위원회”로 “각 1인”을 “각 1명”으로 “5인 이상 15인”을 “5명 이상 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도로명사업”을 “도로명주소사업”로 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

-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
  2.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
  3.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
  4.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(회의록의 작성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토의 및 심의결과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별표 1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 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<u>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2장 도로명의 변경</b></p> <p>제3조(도로명의 변경 요건)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2.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·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(이하 “주소사용자”라 한다. 이하 같다)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1장 총칙</b></p> <p>제1조(목적) …………… 「<u>도로명주소법</u>」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……주소 …………… <u>도로명주소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, 「도로명주소대장규칙」 및 「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」</u>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따른다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

현행	개정안
<p><u>제4조(도로명의 변경)① 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</u>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(복수안)</li> <li>2.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</li> <li>3.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,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</li> <li>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<u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, 제정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변경추진 사유</li> </ul> </li> <li>2.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</li> <li>3.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</li> <li>4. 도로명 변경에 대한 구민 및 구청장의 의견</li> <li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(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구보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. 다만,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보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,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⑦ 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,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5조(도로명주소의 고지·고시) ①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·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2.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3.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</u></li> <li><u>4.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통장이나 고지업무종사원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</b></p> <p><b>제6조(건물번호판의 규격)</b>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로, 노(路)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·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, 면적은 1,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,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·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,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</li> <li>2.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(숫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·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(숫자 “1”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)으로 함</li> <li>3.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</li> </ol> <p>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·설치 등</b>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·설치) ①</b> 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·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·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b>&lt;삭 제&gt;</b></p>
<p><b>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)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, 제작·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),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(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)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신 설&gt;</b></p>	<p><b>제8조(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) ①</b>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(교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, 제작·설치비용, 비용의 납부방법(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),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(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)를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 <p>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</p>	<p>제8조의2(원인자부담)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규칙」에 따른 세입·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.</p>
<p>제9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시행자”라 한다)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 ② 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(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·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)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사업인가서 2. 사업계획도(축척 3,000분의 1 이상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 · 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</p> <p>2.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, 위치 및 수량</p> <p>3.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·기간</p> <p>4.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(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)</p> <p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·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10조(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)</b> ①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(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·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11조(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의무)</b>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(노선명)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(노선명)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1조(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)</b></p> <p>.....</p> <p>.....법에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법에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

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6조(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</b> 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<u>도로명사업에</u>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·공단</li> <li>2.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<u>도로명 관련시설의</u>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</li> </ol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</u>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로명시설의</u> 종류, 수량, 위치</li> <li>2. 계약기간 및 금액</li> <li>3. <u>도로명시설의</u> 관리 및 정비계획</li> <li>4. <u>도로명시설</u> 일제조사 계획</li> <li>5. <u>도로명시설의</u> 훼손·망실에 따른 조치계획</li> <li>6. <u>도로명시설의</u>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계획</li> <li>7. 그 밖에 <u>구청장이</u>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항</li> </ol>	<p><b>제16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) ①</b>  .....  ..... 법에 .....  .....  .....  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<u>지방공기업법</u>」 .....</li> <li>2. ....  <u>도로명주소시설의</u> .....</li> </ol> <p>② ..... <u>도로명주소시설을</u>  .....  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도로명주소시설</u>.....</li> <li>2. ....</li> <li>3. <u>도로명주소시설의</u> .....</li> <li>4. <u>도로명주소시설</u> .....</li> <li>5. <u>도로명주소시설</u>.....  .....</li> <li>6. <u>도로명주소시설</u>.....  .....</li> <li>7. ....  .....</li> </ol>
<p><b>제17조(도로명시설의 점검) ①</b> <u>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</u>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<u>도로명시설의</u>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</u> 훼손·망실 되었거나 훼손·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<u>구청장에게</u>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17조(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) ①</b> .....  <u>도로명주소시설</u>.....  .....  .....<u>도로명주소시설</u>  .....</p> <p>② ..... <u>도로명주소시설</u>.....  .....  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수탁자의 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</p>	<p>제18조(수탁자의 지도·감독) ..... .....도로명주소시설..... .....</p> <p>제7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.....</p>
<p>제19조(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)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구보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</li> <li>2. 도로명주소안내도(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종류, 제작수량</li> <li>3. 안내표지판의 종류, 제작수량, 설치 위치, 규격</li> <li>4. 광고사업 참가자격</li> <li>5. 광고사업 신청 장소, 기간, 제출서류 (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)</li> <li>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·구성계획</li> <li>2.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</li> <li>3. 안내표지판의 규격, 재질,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</li> <li>4.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	<p>제19조(광고의 범위) ① .....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을 광고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</li> <li>2.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</li> <li>3.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</li> <li>4.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</li> </ol>	<p>&lt;삭제&gt;</p>
<p>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, 배점부여기준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중랑구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, 구보·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20조(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,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, 광고주의 모집방법,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, 제작·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·확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도로명주소안내판.....</p> <p>③ ..... .....도로명주소안내판..... ..... .....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29조(간사)</b>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씩 두며, 간사는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<b>제29조(간사)</b>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이 된다.</p> <p>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0조(회의록의 작성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토의 및 진행사항</p> <p>4. 위원·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</p> <p>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<b>제30조(회의록의 작성)</b>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토의 및 심의결과</p> <p>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<b>&lt;삭제&gt;</b></p>

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0년 4월 09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 1. 제정이유

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·경관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사업들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,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재원 (안 제2조)

- 1)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중랑구로 배분되는 수익금
- 2)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의한 수수료, 과태료, 이행강제금 등

나. 기금의 용도 (안 제3조)

- 1) 광고물 등의 정비, 경관개선 사업,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

다.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6조, 제7조)

- 1) 구성 : 12명 이내의 옥외광고 및 기금관련 전문가, 구의원, 공무원 등
- 2) 기금운용계획, 기금결산보고,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재원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중랑구(이하 “중랑구”라 한다)로 배분되는 수익금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  2. 경관개선
  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 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  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  6.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4조(기금의 운영관리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의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.

- ② 기금은 중량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,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
**제5조(위원회의 설치)**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  2. 기금결산보고서안
 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
-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1. 기획홍보과장, 도시디자인과장, 재무과장, 건축과장, 교통행정과장
  2.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
  3. 서울특별시중량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 의원 1명
  4. 그 밖에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-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.

**제8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광



고물관리담당주사가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10조(기금운용계획)**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11조(회계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도시디자인과장
2. 기금출납원 : 광고물관리담당주사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금결산)**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관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  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0년 4월 09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1. 제정이유

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권장구역 지정 및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 존)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
-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

나. “금연우수시설”을 지정하여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우수한 시설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민간단체 등의 금연교육실시를 지원하고 홍보함(안 제6조)

라.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함(안 제8조)

##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(이하 “흡연자”라 한다)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금연”이란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금연권장구역”이란 어린이·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을 말한다.
3. “금연우수시설”이란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담배연기 없이 맑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조례의 범위)** 이 조례의 범위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다.

**제4조(금연권장구역의 지정)**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생활권 공원
3.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
4. 버스·택시정류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
5.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6. 구청장은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 중 금연을 포함한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금연우수시설 지정 및 지원)**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시설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 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“금연우수시설”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.

1. 공중이용시설(사무용 건축물, 복합용도의 건축물, 공연장, 학원, 체육시설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등)
2. 금연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.

**제6조(금연교육 및 홍보)**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공청회 등)**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**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)로 위촉하고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